

대구지방법원 2024. 5. 21 선고 2023가단14552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변 론 종 결 2024. 4. 26.

판 결 선 고 2024. 5. 21.

주 문

1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 중 2/7 지분에 관하여 2022. 8. 1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B에게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14 기재 각 부동산 중 2/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 권민오

별지